

보도자료



보도	2019.9.4(수) 10:00	배포	2019.9.4.(수)
----	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

	금융위 전자금융과장 이 한 진(02-2100-2970)	0) - 0) - 0) - 0) - 0)	유 원 규 사무관(02-2100-2974)
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손 주 형(02-2100-2830)		최 범 석 사무관(02-2100-2836) 이 용 준 사무관(02-2100-2835) 이 영 민 사무관(02-2100-2833)
	금융위 은행과장 유 영 준(02-2100-2950)		송 용 민 사무관(02-2100-2953)
책 임 자	금융위 보험과장 하 주 식(02-2100-2960)		현 지 은 사무관(02-2100-2962)
	금융위 중소금융과장 홍 성 기(02-2100-2990)		이 지 현 사무관(02-2100-2993) 권 진 웅 사무관(02-2100-2983)
	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손 영 채(02-2100-2660)		나 혜 영 사무관(02-2100-2652)
	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장 장 경 운(02-3145-7120)		김 용 태 부국장(02-3145-7125)

제 목 :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

- 전세계적인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따라 금융과 ICT 간 융합도 가속화되고 있으며, 금융회사도 ICT를 수용하거나 그 산업에 진출함으로써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대
 -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, 국무총리께서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 허용을 추진할 것을 지시('18.11.16, 은행장 간담회)
- 이에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
 - 금융회사의 출자 대상인 핀테크기업을 Negative 방식으로 폭넓게 확대하고, 절차 신속성을 제고
 - 핀테크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원칙 제시
 - 핀테크 투자 실패시 제재 감경·면책 기준 적극 적용
-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금융회사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, 핀테크 기업은 신규 진입 유인이 증가하고 안정적으로 新기술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됨
 - 또한, 핀테크 출자·내부화를 통한 금융권의 자기혁신 기회도 부여

1 추진 배경

- □ 전세계적인 디지털 전환(Digital Transformation)의 흐름에 따라 금융과 정보통신기술·산업(ICT) 간 융합도 가속화되고 있음
 - 이에, 금융회사도 ICT를 수용하거나 그 산업에 진출함으로써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대
- □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, 국무총리께서는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허용을 추진할 것을 지시('18.11.16, 은행장 간담회)
 - → 금융회사가 디지털 전환 흐름에 **능동적으로 대응**할 수 있도록 핀테크 투자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

2 추진 내용 [요약]

	현행	개선 (가이드라인 도입)
핀테크 출자 대상	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고유 업무와 밀접(직접)관련 업종이나 효율적 업무 수행에 기여시 출자 가능 → 다만, 그 범위가 불확실 '15.5월 유권해석시 이를 확대 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 상존 전자금융업, 전자금융보조업, 금융전산업, 신용정보업, 금융 플랫폼업만 인정 [Positive 방식] 최근 제·개정된 관련 법령을 반영하지 못함 	■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 범위를 확대 ① [新기술 반영] - AI, 빅데이터, IoT 등 新기술 기업 -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일반 - 금융업 수행시 필요한 ICT 기술 제공 기업 일반(S/W 개발 및 공급업 등) ② [법·제도반영] 금융혁신법상 <u>혁신</u> 금융사업자, 지정대리인 등을 포함 ③ 그 밖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산업과 소비자에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 [Negative 방식]
출자 승인 기간	■ 핀테크기업 출자시 <u>금산법·개별</u> 법에 따라 다소 복잡하게 규율* * 금산법상 출자 未승인시 30일, 보험업법상 2개월 내 회신	■ <u>승인 여부에 상관없이 30일 이내</u> 회신을 원칙 (금산법·개별법 불문)
<u> 펜테크</u> 업무 영위	■ 금융회사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경우에만 부수업무 영위 가능 → <u>핀테크 업무 영위 불확실</u>	■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을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원칙 제시* * 다만, 경영건전성· 이용자 보호·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되는 경우 제한
제재 면책	■ <u>핀테크 투자 실패시 제재 감경·</u> 면책가능한지 여부가 불확실	■ 핀테크 투자 실패시에도 고의·중과실 없을 경우 적극적으로 제재 감경·면책

3 향후 계획

- □ 상기 내용으로 「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」을 발표· 공고('19.9.4)하고, 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에 따라 의견 수렴(~'19.9.24)
 - **의견 수렴** 후 금융행정지도 심의를 거쳐, 관련 법령 개정을 전제로 **2년간 한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**('19.10월~)
- □ 향후 법령 개정 필요사항은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, 가이드라인 운영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진
- ※ [별첨]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[상세 자료]
- ※ 가이드라인 상세 내용은 금융규제 민원포털 홈페이지 공고 (http://better.fsc.go.kr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



"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"